

한국측 질문사항에 대한 회답

(질문1)

한국에서는 예금의 경우 사망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2억 원 이상 인출(사망 전 2년 이내의 경우 5억 원)하여 사적으로 낭비한 경우 인출금액의 20%(한도 2억 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과세시점에 재산자체가 없는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세무조사 때 이를 파악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시점에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회답)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이 예금인출 등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에서도 나와있지만 과세시점에 재산이 없는 경우 신고서에 과세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예금을 인출한 후 사용처가 명확한 경우에는 과세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현금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남아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래 재산인 현금으로서 과세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인출한 현금을 다른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경우 또는 증여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전증여재산으로 가산대상이 되며, 이는 3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으로서 과세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시에 위와 같은 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 시에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위에 준하여 과세됩니다.

(질문2)

상속 시 정산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65세 이상 된 부모로부터 20세 이상의 자식이 정산과세제도를 선택한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상속인은 주로 어떤 경우에 상속 시 정산과세 제도를 적용 받고자 합니까?

정산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메리트로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회답)

1. 상속 시 정산과세 제도를 선택한 비율

「20세 이상의 자녀가 정산과세 제도를 선택한 비율」의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2008년도 세무통계자료에서는 「역년과세의 증여세 신고인

원」 252,339명에 대하여 「상속 시 정산과세 제도를 적용한 신고인원」이 74,108명으로 그 비율은 22.7%입니다

또한 같은 해 「상속인 수」 139,239명 중,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 적용자」는 3,208명으로 2.3%이었습니다.

2. 상속 시 정산과세 제도의 메리트

1) 역년과세(증여세)의 공제액(110만 엔)과 세율(10-50%)과의 비교하여 정산과세 제도의 공제액은 2,500만 엔으로 많다는 점,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20%의 일정세율이 적용되므로 한번에 증여하는 금액이 많아도 납세액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시점에서 정산액이 공제액범위 이내라면, 상속제도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생전증여에 의한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2)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장래에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주식 등)의 평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묶어둘 수 있다. 또한 수익물건의 경우 정산과세제도 적용에 따라 증여후의 수익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점이 있으므로 개인의 주택자금 증여 및 사업승계 준비를 조기에 할 수 있고 상속세의 납세자금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한국의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아래와 같은데, 일본의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떠한지요?

①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

② 무신고, 가공채무, 금융재산 신고누락, 명의개서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신고일까지 등기 등 없이 신고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년

③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로서 일정 유형의 은닉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상속.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회답)

일본에서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3년

② 무신고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 또는 부과결정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③ 거짓이나 기타부정행위로 세액의 전부 또는 면하려는 경정결정 등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

(질문 4)

상속세 조사결과에 대해서 납세자가 불복하는 비율이 전체 조사건수대비 몇% 정도를 차지하며, 불복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인용하는 비율은 불복건수 대비 몇% 정도를 차지하는지요?

(회답)

통계집계기간이 데이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어디까지나 국세청 HP로부터 인용자료입니다.

세목은 상속세·증여세가 합쳐진 것입니다.

1. 조사 건수
14,110건(2008 사무연도 : 2008년7월-2009년6월)
2. 그 중 비위발견 건수
12,008건
3. 당시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건수
352건(2009년도 : 2009년4월-2010년3월)
4. 위 3중에 납세자의 의견을 인용한 비율
(상속세·증여세만 아니고 전 세목에 대한 비율입니다.)
 - ① 일부취소 10.5%
 - ② 전부취소 1.3%
5. 국세불복 심판소에 심사청구한 건수
179건(2009년도 : 2009년4월-2010년3월)
6. 위 5중에 납세자의 의견을 인용한 재결비율(전 세목에 대한 비율)
 - ① 일부취소 9.3%
 - ② 전부취소 5.5%
7. 재판소에 소송제기한 건수
24건
8. 위 7중에 납세자의 의견을 인용한 판결비율(전 세목에 대한 비율)
 - ① 일부취소 2.5%
 - ② 전부취소 2.5%

9. 결론

조사를 받고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한 납세자의 의견이 인용된 비율은 위와 같으며 건수를 보면 당시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352건 중 41건, 국세불복심판소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179건 중 26건, 세무소송 29건 중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세무소송에서의 납세자의의 입장은 아주 힘겨운 상태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측 질문사항에 대한 회답

(질문1)

일본에서는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지 또는 필요하지 않은지(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안 되는지)의 아주 간단한 판단기준으로 50,000엔 + 법정상속인의 수 = 유산 관련 기초공제액을 이용합니다.

한국에서는 과세표준 계산 시 상속공제제도가 많기 때문에 과세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변)

실무상으로 먼저 총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수를 파악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이 21억 원(부동산16억+예금5억), 배우자 + 자녀2명의 경우

(1)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3/7)대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의 공제금액은

- ① 기본공제(일괄적용) 500,000,000원
- ② 배우자공제(3/7) 900,000,000원
- ③ 금융재산공제 100,000,000원
- 공제금액 합계 1,500,000,000원
- ④ 과세표준 600,000,000원
- ⑤ 산출세액 120,000,000원
- ⑥ 납부세액(10%공제 후) 108,000,000원이 됩니다.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재산을 분배 받아도 배우자 공제액은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2) 법정상속지분(3/5)대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의 공제금액은

- ① 기본공제(일괄적용) 500,000,000원
- ② 배우자공제(3/5) 1,260,000,000원
- ③ 금융재산공제 100,000,000원
- 공제금액 합계 1,860,000,000원
- ④ 과세표준 240,000,000원
- ⑤ 산출세액 38,000,000원
- ⑥ 납부세액(10%공제 후) 34,200,000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①상속재산 10억 이상 ②상속인 수를 체크하면 좋습니다.

(질문2)

일본에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 세액경감액은 공제한도액이 1억 6천만 엔이며, 한국에서의 배우자공제는 그 한도액이 30억 원입니다.

화폐가치의 차이를 감안해 보더라도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과세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배우자 공제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답변)

한국의 경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의 단점은 유산총액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서 유산취득자의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점과 유산분할방법이 다를지라도 세액의 변동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산층을 보호하고 일정한 재산범위 내에서는 상속공제 액 등을 반영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배우자 공제액이 많은 이유는 부부지간의 부의 이전은 「부의 세대내의 이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해 줌으로서 상속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질문1의 계산사례를 보면 총상속재산 21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 지분대로 상속 받은 경우의 배우자 공제액은 9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30억 원 이상 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액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질문3)

일본에서는 가업을 계속한 경우 가업용으로 사용된 부지에 대하여 소규모 택지 등의 감액(사업용)규정이 적용됩니다.(부지가액의 80%, 400㎡까지)

한국의 가업상속공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가업상속공제액은 재산가액의 40%를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또한 계속 가업을 이어감에도 공제율이 40% 밖에 되지 않음은 적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가업상속이란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 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상속을 의미합니다.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 억 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 년

いた場合には80億ウォン、被相続人が20年以上継続して経営していた場合は100億ウォンを限度とします。

② 2 억 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 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가업 상속 재산은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법인기업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합니다.

2006 년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5 년 이상 영위한 사업으로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을 1 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였으나, 2007 년 가업상속재산의 20%, 30 억원을 한도로 공제액을 확대하는 대신 적용요건을 강화하여 피상속인이 15 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사업영위기간의 80%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2008 년 가업상속의 적용요건은 완화되고,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업상속재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60 억 원 (80 억 원, 100 억 원)한도로 공제액을 늘였고,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10 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사업영위기간의 60%에 해당되는 경우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고용 유지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공제율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4)

일본에서는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지에 대하여 소규모택지 등의 감액(거주용)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지가액의 80%, 240㎡까지)

적용 요건은 피상속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한 건물의 부지로서 배우자가 취득하거나 동거친족·별거친족이 취득하여 계속 소유해야만 합니다만 그 주택자체의 요건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만 10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나 이사로 인하여 주거가 바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답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① 2009.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일 것
- ② 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일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④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일 것
- 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법 제 23 조의 2 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징집
- ②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③ 위① 및 ②와 비슷한 사유로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기간 기준(10년 이상)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기간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심지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 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 하다가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